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『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 및 『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기준·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』등 상위법령 위반사항을 개정하고,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방법을 개선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※ 기획감사실-3604(2018.5.10.)에 의거 자치법규 정비대상 정비

※ 환경부-3496(2018.10.10)호에 의거 성주군 피해방지단 구성 방법 관련조례 검토 결과 반영

3. 주요내용

○ 농업인의 정의 개정(안 제2조제4호)

○ 인명피해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 개정(안 제9조)

○ 농작물 피해 및 구제금액 산정 기준 개정(안 제11조)

○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제단 운영 개정(안 제20조)

○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 신설(안 제20조의2)

○ 대장관리 개정(안 제22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

-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- 「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·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」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〔주민복지과-58476(2018. 10. 22.)〕

○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〔기획감사실-8390(2018. 10. 23.)〕

○ 입법예고 : 의견 없음(예고기간 : 2018. 10. 19. ~ 2018. 11. 8.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업무규정에 부합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

○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제외대상 조정, 피해보상금 인상 등 업무규정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피해방지단 구성방법 및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피해보상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